

금융실명제의 이모 저모

금융실명제는 은행과 농·수·축협, 단자, 증권, 투자 신탁 등 모든 금융 기관을 통한 금융 거래를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실명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제부터 모든 금융거래에는 실제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된 것이다.

〈편집자〉

하루 아침에 날벼락이라는 말은 급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쓰이는 말이다.

8월 12일 오후에 있었던 김영삼대통령의 특별담화가 그 예일 것이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경제계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긴급명령에 의해 발표된 이 조치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 종전의 '실명법'보완이 불가피하나, 사안의 성격상 법개정 절차에 따른 금융 시장 동요로 막대한 경제의 혼란이 예상되어 이러한 부작용을 단시일내에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취해진 조치인 것이라고 한다.

급작스런 금융 실명제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거함(巨艦)과도 같은 존재인 것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금융 경제에 따른 암적 존재로 분류되는 지하 경제의 흑을 도려내고 세수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우리와 같이 하루 아침에 실명제를 한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실명제 실시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 금융가의 기류

가. 은행

실명제 실시에 따라 가장 민감하게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곳은 은행이다.

은행은 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은행 예금이 많이 빠져 나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은행 예금 금리가 다른 금융 기관보다 낮기 때문이며, 은행을 찾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노출을 꺼려 예금을 인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상은 금융가에서 표출된 이야기이며, 은행권에서는 이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인 과제인 것이다.

나. 증권

주식 시장이 금융 실명제 실시에 따른 변동은 예측을 불허하는 호재와 악재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토출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현상에서 주식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주식 공급량을 통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요측은 부동산자금의 유입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10월 중순께부터 실명제 정착 기간이 끝나면서 제도 금융권 안팎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따라서 투기의 자금 이동이 제도적으로 봉쇄되고 주식이 양도차익 과세 면제라는 특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가지 예측해 볼 것은 부동산자금은 말 그대로 어느 한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가를 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실물 경기가 묶여 있는한 주식 시장에 부동 자금이 유입된다 해도 종합 주가지수만 움직일뿐 투기위험이 크게 보일 우려도 있다고 한다.

다. 부동산

금융 실명제의 부작용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실물 경제로의 투기성 자금 유입이다.

특히 실물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부동산은 금융 실명제의 자금 은닉처로 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당초에 우려했던 생각과는 달리 부동산이나 서화·골동품쪽으로 자금이 흐르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부동산가에서는 실물 경제가 궤도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시중 유동 자금이 실물 경제로 흘러들 가능성은 상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실명제로 인하여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어 있다고는 보나 부동산의 움직임은 시점을 대략 내년 초쯤으로 보고있다.

실명화 과정을 거친 자금이 3, 4개월간 관망세를 보이다 내년 봄 이사철을 앞두고 투자 대상을 찾

아 움직일 것으로 진단되기 때문이다.

한편 서화와 골동품은 당분간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고가의 미술품이나 서화·골동품은 사들이면 자금 추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자금의 흐름, 부동산의 투기, 비실명제에 따른 이익 상실 등 경제 활동의 모든 부분이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없으며 모든 거래가 밝혀져야 된다는 원칙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실명제가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거래는 실명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 기관에 예금·적금·부금 등을 할 때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과 납세자 등록번호 등을 밝혀야 한다.

특히 동창회·친목계·사우회 또

는 종친회 등과 같이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순 임의 단체는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된다.(단체명을 부기하는 것은 임의)

이러한 과정은 경제 질서 의식을 갖추는 국민 생활의 기본적 요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경제 정의가 실현되고 유통 질서가 정립될 것이며, 음성 자금이 합법적으로 이용될 때 금융권에서도 배분 정의를 위한 정책이 이룩될 것이다.

금융 질서가 국민 생활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면 그 수단은 생활 지혜를 창출해 내는 흐름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한다.

2. 금융 거래의 지혜

가. 거래의 근거는 반드시 기록 보관

실명 시대에는 거래 근거를 확보하고, 기록·유지해야 하는 것은 기초적 생활 요건이다.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안전한 증거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자금 출처 기록과 관계 영수증, 간이 계산서 등이 방패막이고 때로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영수증이나 모두 통하는 것은 아니고 꼭 챙겨 두어야 할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말한다. 부양 가족의 진찰과 진료에 따른 병원 영수증, 이 영수증은 공제 한도가 연간 최고 1백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노부모에 대한 효도성 의료비나 장애인의 재활에 쓴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또한 보험료 납입 영수증도 연간 50만원까지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이 아닌 생명보험·손해보험(자동차보험 포함)중에서도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불입한 보험료를 넘지 않는 것은 모두 해당된다.

교회나 성당·사찰에 내는 기부금 영수증도 연간 소득의 5%까지 공제된다. 특히, 장학재단에 개인적으로 기부한 경우도 공제 대상이 되고 있다.

봉급 생활자가 학자금으로 납입한 영수증도 전액 공제된다. 학생 신분인 봉급 생활자 본인의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은 대학원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나 형제 자매의 교육비 영수증까지 간수하면 이득이 될 수 있다.

96년 1월 1일부터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자 계산서도 빠짐없이 반드시 1년분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이자 계산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같이 제출해야 무신고 가산세도 면제되고, 은행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도 총이자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통장수를 줄여야

실속없는 통장은 될 수 있는한 통장 수를 줄여야 편하다.

3천만원 이하이면 빨리 정리하는 편이 속편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면 오는 10월 12일 이후가 적기라고 세무사들이 어드바이스 해준다.

96년부터는 이자소득까지 종합과세 하게된다. 그때에는 부인이나 자식명의로 고객 예금은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고객 예금자는 실명 전환 기간이 끝나는 10월 12일 이후부터 1년정도 시간을 갖고서 통장을 차츰 통폐합하는게 좋다고 한다.

예금 자금은 은행에만 두지 말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보험·상호신용금고 등에 분산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한다.

다. 개인도 주거래 은행 필요

실명제 실시 이후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주거래 은행이 필요하다.

단골 은행과 신용을 착실히 쌓아가는 고객은 전세대금 대출부터 물품 할부 구입에 이르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름 석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실명시대의 또 다른 지혜인 셈이다. 주거래 은행에서 실명제 이후 받은 혜택은 수표를 발행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인기 만점인 은행보증 가계수표가 바로 그 것이다.

그동안 은행에서 개인은 50만원까지만 수표를 발행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번에는 발행 한도를 1백만원 올렸다.



금융기관에 예금·적금·부금 등을 가입할 때에는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과 납세자 등록번호 등을 밝혀야 한다.



현금을 갖고 다니는 번거로움이 없게된 것이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주거래 은행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 상품에 가입한 후 창구에서 지급보증 도장이 찍힌 수표책을 받아 한두장씩 뜯어 쓰면 된다.

라. 매매계약서 관련 통장 등 보관

실명 시대에는 부동산 거래때 대금을 납입하는 수표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인 명의로 주택을 장만하는데 멋모르고 남편 통장에서 수표를 인출, 납입대금으로 냈다가는 증여세 조사를 받기 십상이다. 남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무주택자나 현지 주민 당첨권을 사서 아파트를 장만하려다가는 수표 추적으로 자금 출처가 드러나게 된다. 최악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는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모두 청약자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수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부동산 매매대금은 자녀나 부인 통장에서 입출금시켜 놓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수공하는 서류는 다음 4가지를 꼽는다.

① 소득세 납입 증명서·납세 영수증 ② 남의 돈을 빌린 경우에는 차용 증명서나 부채 증명서 ③ 다른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매매 계약서나 등기부 등본 ④ 전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전세 계약서 등이다.

마. 사인을 준비하자

실명제 이후 각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도장 대신 사인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아직 인감이라는 도장의 위력이 남아 있기는 하나 외국의 선례를 보면 사인은 도장보다 위조가 어려워져 도장과 같이 휴대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없어 좋다는 것이다.

실명 시대에 이르러 각종 관공서류나 은행권 등에서도 사인이 대중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남보기에 거부감을 주지 않는 멋진 사인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바. 자동 이체 활용이 간편

실명 시대는 여러 곳에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된다. 송금을 해도 그렇고 수표를 지불해도 신분증을 요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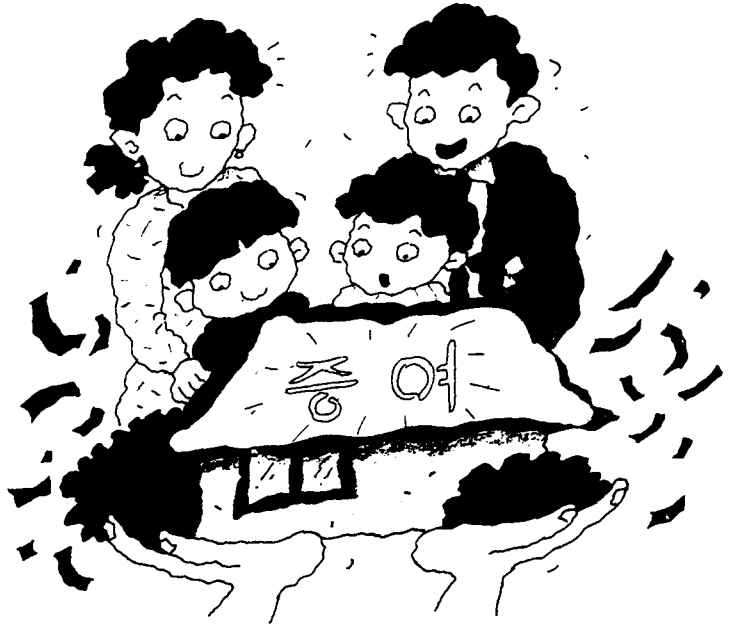
뿐만아니라 적금·갯돈·동창회 회비·종친회 회비 등 정기적으로 지출해야 할 곳이 한달에 수십번씩 발생하게 된다. 이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동 이체란, 고객이 정한 시기에 일정한 액수를 자동적으로 다른 계좌에 넣어주는 서비스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거나 장학회 등 각종 친목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미리 자동 이체 신청을 해두면 편리하다.

다만 한가지 불편스러운 것은 있다. 다른 은행 계좌에는 아직 자동 이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불편이 해소된지 오래되지만 아직 우리 형편은 지로 계좌가 아니면 다른 은행간 자동 이체는 안되고 있다.

사. 보험은 자료 조사 거의 없어
보험은 대부분 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보험계약의 경우 주체



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아들이나 딸들이기 때문에 검은 돈과 인연이 멀고 비실명으로 가입한 고객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상품의 대부분은 서민들의 건전한 저축 수단이고 가입 한도가 대부분 제한되어 있어, 거의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게다가 증여세 조세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10년 이상짜리 보험에 저축해 두면 증여세가 저절로 면제 된다.

아. 축의금·부의금 접수대장 보관

실명 시대에는 1인당 20만원을 넘는 부의금과 축의금을 내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20만원 초과 부조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세무서 직원이 결혼식장이나 장

례식장에서 봉투를 하나 하나 뜯어 볼리는 없지만 문제는 받는 쪽에서 축의금이나 부의금 내역을 기재한 접수대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접수대장에 A가 2백만원 B회사가 3백만원식으로 기록했다가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명제 실시 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사람은 경조금을 내는 쪽보다 받는 쪽이다. 경조금도 상속세와 증여세로 간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접수액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접수총액이 제아무리 고액이라도 현행 세법에 상속세나 증여세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접수대장에 기록할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 한도액이 20만원이 넘을 때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 기록하는 것도 절세(節稅)의 요

령이다.

장례비용은 아무리 소액이라도 2백만원까지 비용으로 공제되고 2백만원 이상이라도 세금 계산서간이 계산서처럼 확실한 증빙 자료를 갖추면 장례 비용으로 인정돼 공제한다.

자. 3천만원까지 증여공제

이제는 재벌들도 재산을 2세에게 물려주기 위해 상속 문제를 연구하는 시대는 없어져 갈 것 같다.

상속 문제는 실명제로 인하여 공통적인 상속(증여)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한다.

세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행 법상 법이 허용한 한도내에서 분할하여 사전 상속하는 방법이 생활의 지혜라고 제시한다.

미성년자인 경우 5년에 한번씩 1천 5백만원씩 금융 자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며 성년의 경우는 3천만원씩 상속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게 94년도 실시될 개정법에 되어 있다고 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현금 증여액보다 많은 것을 상속할 수 있다고 한다.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물리므로 실제 시세는 더 많은 부동산을 세금없이 상속할 수 있다고 한다.

차. 신용 카드로 신분도 대응

실명 시대는 크레디트 카드가 신분증 역할도 해준다.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신용 카드만 제시하면 신분 확인이 된다.

우리 나라도 실명제를 기해 크레디트 카드 사용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신분 확인, 신용도 등이 카드로 가름돼 VIP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

느 곳에서나 VIP로 대접받는 시대가 형성될 것이라 한다.

이러한 추세로 모든 경제 영역에서 신용 카드가 확대 이용되면 지갑속의 현금이 사라질 날도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백화점이나 호텔 등에서는 자체 신용 카드를 만들어 단골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신용 사회에서 요구되는 서비스의 일환인 것이다.

카. 기부금 공제

절세를 위해서는 기부금도 정확히 알고 내는 것이 좋다.

기부금에는 전액 세금 공제되는 기부금과 소득의 5% 한도에서 공제되는 지정 기부금이 있다. 전액 필요 경비로 인정돼 공제받는 기부금은 수재 의연금, 국방 성금, 국군 위문금,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기부금 등으로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지정 기부금에는 학교 및 학술 연구 단체·장학 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장학금, 사회 복지 법인·문화 예술 단체·주무 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한국자유총연맹·대한재향군인회·대한적십자사·노인 복지 법인 등의 기부금,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이 해당된다.

한편,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경우 교과의 총회, 교구, 종단

등 단체가 주무 관청에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상조 회비나 공제 회비 등 친목 단체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실명제 실명확인 추이

실명시대의 실명에 따른 각종 부분에서 세밀히 분석하고 확인하며, 주의해야할 생활의 지혜가 많이 있다. 물물거래가 있고 자금이 유통되는 곳은 어느 곳이나 실명에 의한 밝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듯이 모든 신용에 이르기까지 밝은 거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국민의 바람과 결의는 외국에서도 부정의 시각에서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리서치 앤 리서치」설문 조사에 의하면 실명제 실시 이후 국민의 46.8%가 실명제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통장 소지가의 73.8%가 실명 확인을 끝낸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한다.

실명제를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2백 81명의 응답자가 「음성자금이 없어져서」24.9%, 부작용 「불편이 없다」14.9%, 「언론이나 주위사람의 평가가 좋기 때문」14.9%로 나타났다고 한다.

실명제가 우리 국민이 넘어가야 할 준령으로 정해진 이상 국민 모두가 실명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실명제로 신경제 개혁으로 신한국